

의안번호	2219608
의 퇴 인	김위상의원
회 답 일	2026.7.21.
추계번호	26B3302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1조(재정적·기술적 지원 등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,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제1항) <u>4의2. 태양광 패널, 풍력 블레이드 등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설비 또는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·제어하는 에너지저장 장치의 핵심 부품에 대한 사업자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</u>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41조(재정적·기술적 지원 등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설비 또는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·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의 핵심 부품에 대한 사업자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·기술적 지원 및 자금 융자 등을 할 경우,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기준, 83개의 태양광패널 제조·수입 및 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의무량을 규정하고, 미이행시

727원/kg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‘태양광 패널 생산자재활용제’를 운영하고 있음

- 참고로,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을 위한 비용은 사업자가 ‘태양광 패널 공제조합’에 납부한 분담금으로 충당함 (452원/kg)

[표 1] 연도별 태양광 패널 재활용 실적

(단위 : 톤)

연도	재활용 의무량	재활용 실적	의무자(업체수)		
			제조	수입	판매
2023	159	552	10	26	35
2024	212	790	10	27	40
2025	801	1,871	11	37	35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, ‘태양광 패널 생산자재활용제’의 대상인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재정적·기술적 지원 및 자금 융자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·내용 및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재로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운영현황

(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)

□ EPR 운영현황

○ (의무자*) '25년 기준 83개사(제조 11개사, 수입 37개사, 판매 35개사)

* 전년도 기준, 제조매출액 10억원 이상, 수입수입액 3억원 이상, 판매매출액 50억원 이상

○ (처리방법) 수거 신청*(배출자→공제조합) → 철거 요청(공제조합→ 전기공사협회) → 철거(전기공사협회) → 수거·운반(공제조합 운반차량) → 재활용 처리(6개 재활용사업자)

< 태양광 폐패널 회수·재활용 처리 과정 >



○ (비용부담) 의무자가 회수·재활용 의무량에 맞춰 산정된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

* 재활용 단위비용 : 727원/kg(미이행시 부과금), 공제조합 가입 의무자의 분담금 : 452원/kg, 공제조합의 재활용사업자 지원금 : 347원/kg